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가단273248(본소), 2023가단12481(반소) 판결
[대여금 ·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현

담당변호사 김범수

피고(반소원고) B

변 론 종 결 2024. 3. 28.

판 결 선 고 2024. 5. 2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30.부터 2024. 5.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중 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C은 원고의 지인으로서 D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개명 전 성명: F)은 C의 동생으로서 D회사의 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금전 수수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순번	일자	지급자	수령자	금액	‘메모’란 기재
1	2017. 12. 29.	피고	D회사	70,000,000원	C D회사
2	2018. 1. 29.	피고	원고	30,000,000원	D회사건
3	2018. 2. 27.	피고	(주)G	50,000,000원	원고가지급
4	2018. 3. 14.	피고	원고	50,000,000원	
5	2018. 4. 2.	피고	C(D회사)	50,000,000원	3개월 D회사 C
6	2018. 5. 21.	피고	C(D회사)	50,000,000원	C사장D회사

7	2019. 4. 2.	원고	피고	150,000,000원	
8	2019. 5. 27.	피고	원고	10,000,000원	
9	2019. 7. 1.	피고	원고	20,000,000원	

다. C은 2018. 6. 15.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고, 2018. 7. 1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데(2018회단100085호,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이 사건 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18. 8. 7. 이 사건 회생절차에 C에 대한 회생담보권 80,000,000원, 회생채권 70,000,000원을 신고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회생담보권 300,000,000원(개시 전 이자 13,500,000원)을 신고하였다. C은 2018. 8. 30. 채권조사절차에서 원고와 피고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8. 8. 31. ‘원고와 피고가 C에게 지급한 금액의 합계는 원고 250,000,000원, 피고 120,000,000원의 합계 총 370,000,000원인데, 그중 실제 채권액은 원고 70,000,000원, 피고 300,000,00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회생절차에 제출하였고, C은 2018. 9. 18.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의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를 철회하였다.

마. C은 2019. 3. 7.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고, 회생담보권의 일부를 변제한 후 2019. 5. 27.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바. 피고는 2020. 4. 8. E이 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300,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E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0. 7. 8. 승소판결을 받았으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합215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4. 2.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30,000,000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사업자금 300,000,000원을 빌려주라고 피고에게 부탁하였는데, 피고는 C을 모르는 상태였으므로 C에게는 170,000,000원만 빌려주고,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빌려줄테니 C에게 빌려주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C에게 170,000,000원,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각 송금한 것이고, 2019. 4. 2. 원고로부터 130,000,000원을 변제받으면서 20,000,000원을 차용하여 총 1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 30,000,000원인 것으로 잘못 알고 2019. 7. 1.까지 원고에게 총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착오로 추가 송금한 1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7. 12. 29.부터 2018. 5. 21.까지 C에게 170,000,000원,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② C은 2022. 4. 4.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17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130,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원고와 피고는 스스로 이 사건 회생절차에 C에 대한 3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자가 피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C에 대한 300,000,000원의 채권을 모두 인정받았으며, 위

대여금 채권의 연대보증인인 E에 대해서도 300,000,000원의 보증 채권에 대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원고는 처음부터 피고로부터 300,000,000원을 받아서 주겠다고 이야기하였었는데, 2022. 4. 4. 피고에게 기계장치에 대한 경매를 연기해달라고 부탁하러 갔더니 위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서명하라고 하여 C으로 하여금 서명하도록 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이 아닌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송금한 2019. 4. 2. 당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3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한편 피고는 위 150,000,000원이 두 사람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관계에 기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30,000,000원을 제외한 대여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청구를 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3. 8.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소진